

---

# 해커스

# 전산세무 2급

## 이론+실기+기출문제

---

### 세법 개정자료

2017년 교재 출간 후 2018년 2월까지의 세법 개정으로 인해  
수정 및 추가되는 내용입니다.  
2017년판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여 학습하시길 바랍니다.

---

### 2018 개정세법 반영

---

 해커스 금융

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본 해커스 전산세무 2급 이론+실기+기출문제 세법 개정자료를 복제·전송·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.

## <해커스 전산세무 2급 이론+실기+기출문제(2017년 최신판)> 2018 세법 개정 사항

※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사항을 토대로, 해커스 전산세무 2급 교재에 수정 되어야할 사항을 정리한 표입니다.  
 2017년 최신판 <해커스 전산세무 2급 이론+실기+기출문제> 교재로 학습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2018년 전산세무 2급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.  
 세법 개정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는 수정하여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

(2018.03.21. 업데이트)

### 1. 선발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

#### 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부가가치세법 제17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선발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가수령 없이 선발급<sup>1)</su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sup>1)</sup> 법정 거래에 한함 : (예) 장기할부판매, 부동산임대용역</li> </ul> </li> <li>○ 대가수령과 동시에 선발급</li> </ul> </li> <li>○ 선발급 후 7일 이내 대가 수령</li> <li>○ 선발급 후 7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 대가 수령<sup>1)</su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sup>1)</sup>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서·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되어야 함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선발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가수령 없이 선발급<sup>1)</su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sup>1)</sup> 법정 거래에 한함 : (예) 장기할부판매, 부동산임대용역</li> </ul> </li> <li>○ <b>대가수령분 선발급<sup>1)</sup>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sup>1)</sup> <b>대가를 먼저 받은 경우, 대가를 받은 날이 아니라 공급시기가 되기 전의 다른 과세기간에 발급하는 것도 인정</b></li> </ul> </li> <li>○ 선발급 후 7일 이내 대가 수령</li> <li>○ 선발급 후 7일이 지난 후 @ 30일 이내 또는 <b>㉞ 동일 과세기간 이내</b> 대가 수령 <sup>1)2)</su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sup>1)</sup>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서·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되어야 함</li> <li><sup>2)</sup> <b>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 대가 수령 (㉞)만 인정</b>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개정이유&gt; 선발급 세금계산서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</p>

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
402	(2) ②	<p>② <b>대가수령과 동시에 발급</b></p> <p>사업자가 본래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·용역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 동 금액(선수금)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재화·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.</p>	<p>② <b>대가수령분에 대하여 발급</b></p> <p>사업자가 본래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·용역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 동 금액(선수금)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재화·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.</p> <p><b>(참고)</b> 본래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를 먼저 받은 경우, 대가를 받은 날이 아니라 공급시기가 되기 전의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도 인정된다.</p> <p>(예) 20x1년 4월 20일에 선수금 22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 수령 → 20x1년 9월 20일에 220,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→ 20x2년 1월 20일에 재화 인도</p>
402	(2) ④	<p>④ 발급 후 (7일이 지난 후 <b>30일 이내</b>) 대가 수령</p> <p>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, 사업자가 본래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·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서·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</li> <li>• <b>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내일 것</b></li> </ul>	<p>④ 발급 후 (7일이 지난 후 <b>㉠ 30일 이내 또는 ㉡ 동일 과세기간 이내</b>) 대가 수령</p> <p>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, 사업자가 본래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·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서·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</li> <li>• <b>㉠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내이거나</b></li> <li>• <b>㉡ 발급일이 속하는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수령할 것 (단, 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가를 수령할 것)</b></li> </ul>

## 2.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

### 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	<input type="checkbox"/>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 공제율 ○ 9/109	<input type="checkbox"/>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 공제율 ○ 10/110	<개정이유> 중고차 매매 사업자 지원

### 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
520	(1) ②	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 = (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1) × 3/103) + (중고자동차 매입가액 × 9/109)	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 = (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1) × 3/103) + (중고자동차 매입가액 × 10/110)

### 3. 가공거래 등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

#### 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부가가치세법 제60조	<input type="checkbox"/>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: <b>2%</b>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: <b>1%</b> ○ <b>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포함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: <b>3%</b> <input type="checkbox"/> <b>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: 2%</b>	<개정이유>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

#### 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		
429	② 표	② 세금계산서 가산세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내용</th> <th>가산세 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미발급 등 [62]</td> <td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미발급 : ~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<b>가공발급 : ~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위장발급 : ~                         </td> <td>공급가액 × <b>2%</b><sup>1)</sup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<sup>1)</sup>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(예.법인)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%를 가산세로 한다.</p>	구분	내용	가산세 금액	미발급 등 [62]	• 미발급 : ~ • <b>가공발급 : ~</b> • 위장발급 : ~	공급가액 × <b>2%</b> <sup>1)</sup>	② 세금계산서 가산세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내용</th> <th>가산세 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미발급 등 [62]</td> <td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미발급 : ~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위장발급 : ~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<b>과다기재 :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</b> </td> <td>공급가액 × 2%<sup>1)</sup></td> </tr> <tr> <td>• <b>가공발급 : ~</b></td> <td>공급가액 × <b>3%</b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<sup>1)</sup>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(예.법인)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%를 가산세로 한다.</p>	구분	내용	가산세 금액	미발급 등 [62]	• 미발급 : ~ • 위장발급 : ~ • <b>과다기재 :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</b>	공급가액 × 2% <sup>1)</sup>	• <b>가공발급 : ~</b>	공급가액 × <b>3%</b>
구분	내용	가산세 금액															
미발급 등 [62]	• 미발급 : ~ • <b>가공발급 : ~</b> • 위장발급 : ~	공급가액 × <b>2%</b> <sup>1)</sup>															
구분	내용	가산세 금액															
미발급 등 [62]	• 미발급 : ~ • 위장발급 : ~ • <b>과다기재 :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</b>	공급가액 × 2% <sup>1)</sup>															
	• <b>가공발급 : ~</b>	공급가액 × <b>3%</b>															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														
431	(2) 표	<p>(2)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293 244 696 284">우선 적용되는 가산세</th> <th data-bbox="696 244 1097 284">적용 배제되는 가산세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293 284 696 571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등록·타인명의등록 가산세(1%)</li> </ul> </td> <td data-bbox="696 284 1097 571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지연발급·부실기재 가산세(1%)</li> <li>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(1%, 0.5%) (참고)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(2%)는 적용 배제되지 않음</li> <li>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(0.5%, 0.3%)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293 571 696 751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미발급·가공·위장 가산세(2%)</li> </ul> </td> <td data-bbox="696 571 1097 751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등록·타인명의등록 가산세(1%)</li> <li>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(0.5%, 0.3%)</li> <li>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(0.5%)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293 751 696 900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(1%)</li> <li>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(1%)</li> <li>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(1%, 0.5%)</li> </ul> </td> <td data-bbox="696 751 1097 900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(0.5%, 0.3%)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293 900 696 1018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미발급·지연발급 가산세(2%, 1%)</li> </ul> </td> <td data-bbox="696 900 1097 1018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(1%)</li> <li>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(1%, 0.5%)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293 1018 696 1091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(1%)</li> </ul> </td> <td data-bbox="696 1018 1097 1091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(1%, 0.5%)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우선 적용되는 가산세	적용 배제되는 가산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등록·타인명의등록 가산세(1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지연발급·부실기재 가산세(1%)</li> <li>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(1%, 0.5%) (참고)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(2%)는 적용 배제되지 않음</li> <li>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(0.5%, 0.3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미발급·가공·위장 가산세(2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등록·타인명의등록 가산세(1%)</li> <li>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(0.5%, 0.3%)</li> <li>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(0.5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(1%)</li> <li>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(1%)</li> <li>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(1%, 0.5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(0.5%, 0.3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미발급·지연발급 가산세(2%, 1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(1%)</li> <li>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(1%, 0.5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(1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(1%, 0.5%)</li> </ul>	<p>(2)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1171 244 1574 284">우선 적용되는 가산세</th> <th data-bbox="1574 244 1975 284">적용 배제되는 가산세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1171 284 1574 571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등록·타인명의등록 가산세(1%)</li> </ul> </td> <td data-bbox="1574 284 1975 571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지연발급·부실기재 가산세(1%)</li> <li>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(1%, 0.5%) (참고)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(2%)는 적용 배제되지 않음</li> <li>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(0.5%, 0.3%)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171 571 1574 751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미발급·가공·위장·<b>과다기재</b> 가산세(2%, <b>3%</b>)</li> </ul> </td> <td data-bbox="1574 571 1975 751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등록·타인명의등록 가산세(1%)</li> <li>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(0.5%, 0.3%)</li> <li>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(0.5%)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171 751 1574 900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(1%)</li> <li>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(1%)</li> <li>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(1%, 0.5%)</li> </ul> </td> <td data-bbox="1574 751 1975 900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(0.5%, 0.3%)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171 900 1574 1018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미발급·지연발급 가산세(2%, 1%)</li> </ul> </td> <td data-bbox="1574 900 1975 1018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(1%)</li> <li>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(1%, 0.5%)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171 1018 1574 1091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(1%)</li> </ul> </td> <td data-bbox="1574 1018 1975 1091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(1%, 0.5%)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171 1091 1574 1139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세금계산서 위장 가산세(2%)</b></li> </ul> </td> <td data-bbox="1574 1091 1975 1139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(2%)</b>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우선 적용되는 가산세	적용 배제되는 가산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등록·타인명의등록 가산세(1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지연발급·부실기재 가산세(1%)</li> <li>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(1%, 0.5%) (참고)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(2%)는 적용 배제되지 않음</li> <li>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(0.5%, 0.3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미발급·가공·위장·<b>과다기재</b> 가산세(2%, <b>3%</b>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등록·타인명의등록 가산세(1%)</li> <li>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(0.5%, 0.3%)</li> <li>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(0.5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(1%)</li> <li>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(1%)</li> <li>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(1%, 0.5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(0.5%, 0.3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미발급·지연발급 가산세(2%, 1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(1%)</li> <li>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(1%, 0.5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(1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(1%, 0.5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세금계산서 위장 가산세(2%)</b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(2%)</b></li> </ul>
우선 적용되는 가산세	적용 배제되는 가산세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등록·타인명의등록 가산세(1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지연발급·부실기재 가산세(1%)</li> <li>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(1%, 0.5%) (참고)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(2%)는 적용 배제되지 않음</li> <li>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(0.5%, 0.3%)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미발급·가공·위장 가산세(2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등록·타인명의등록 가산세(1%)</li> <li>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(0.5%, 0.3%)</li> <li>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(0.5%)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(1%)</li> <li>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(1%)</li> <li>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(1%, 0.5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(0.5%, 0.3%)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미발급·지연발급 가산세(2%, 1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(1%)</li> <li>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(1%, 0.5%)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(1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(1%, 0.5%)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우선 적용되는 가산세	적용 배제되는 가산세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등록·타인명의등록 가산세(1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지연발급·부실기재 가산세(1%)</li> <li>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(1%, 0.5%) (참고)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(2%)는 적용 배제되지 않음</li> <li>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(0.5%, 0.3%)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미발급·가공·위장·<b>과다기재</b> 가산세(2%, <b>3%</b>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등록·타인명의등록 가산세(1%)</li> <li>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(0.5%, 0.3%)</li> <li>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(0.5%)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(1%)</li> <li>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(1%)</li> <li>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(1%, 0.5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(0.5%, 0.3%)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미발급·지연발급 가산세(2%, 1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(1%)</li> <li>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(1%, 0.5%)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(1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(1%, 0.5%)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세금계산서 위장 가산세(2%)</b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(2%)</b>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## 4. 정기에금 이자율 조정

##### 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	<input type="checkbox"/> 정기에금 이자율 ○ 연 <b>1.6%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정기에금 이자율 ○ 연 <b>1.8%</b>	<개정이유> 시중 이자율 감안

##### 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						
484	기출 확인 문제	(기출확인문제) • 간주임대료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. • 보증금 : 1억원      • 이자율 : <b>1.6%</b> • 대상 기간 일수 : 91일 • 당해 연도 총 일수 : 365일      • 원단위 미만은 절사할 것	(기출확인문제) • 간주임대료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. • 보증금 : 1억원      • 이자율 : <b>1.8%</b> • 대상 기간 일수 : 91일 • 당해 연도 총 일수 : 365일      • 원단위 미만은 절사할 것																		
485	⑤	(기출따라하기) ⑤ 과세(기타)(정규영수증외매출분)[4]의 금액란에 현금매출“5,000,000”과 간주임대료 “398,904” <sup>1)</sup> 의 합계인 “5,398,904”을 입력하면 세액란에 금액의 10%인 “539,890”이 자동으로 입력된다. <sup>1)</sup> 간주임대료(과세표준) = 보증금 × 1.6% × (일수/365) = 100,000,000원 × 1.6% × (91/365) = 398,904원	(기출따라하기) ⑤ 과세(기타)(정규영수증외매출분)[4]의 금액란에 현금매출“5,000,000”과 간주임대료 “448,767” <sup>1)</sup> 의 합계인 “5,448,767”을 입력하면 세액란에 금액의 10%인 “544,876”이 자동으로 입력된다. <sup>1)</sup> 간주임대료(과세표준) = 보증금 × 1.8% × (일수/365) = 100,000,000원 × 1.8% × (91/365) = 448,767원																		
485	중간	(화면캡처에서) ⑤ 5,398,904 / 539,890	(화면캡처에서) ⑤ 5,448,767 / 544,876																		
509	(1) 표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과세표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간주임대료</td> <td>• 7.1. ~ 7.31. = 10,000,000원 × 1.6% × (31/365) = 13,589원</td> </tr> <tr> <td>• 8.1. ~ 9.30. = 20,000,000원 × 1.6% × (61/365) = 53,479원</td> </tr> <tr> <td>합 계</td> <td>∴ 소계 = 67,068원</td> </tr> <tr> <td>합 계</td> <td>3,417,068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과세표준	간주임대료	• 7.1. ~ 7.31. = 10,000,000원 × 1.6% × (31/365) = 13,589원	• 8.1. ~ 9.30. = 20,000,000원 × 1.6% × (61/365) = 53,479원	합 계	∴ 소계 = 67,068원	합 계	3,417,068원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과세표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간주임대료</td> <td>• 7.1. ~ 7.31. = 10,000,000원 × 1.8% × (31/365) = 15,287원</td> </tr> <tr> <td>• 8.1. ~ 9.30. = 20,000,000원 × 1.8% × (61/365) = 60,164원</td> </tr> <tr> <td>합 계</td> <td>∴ 소계 = 75,451원</td> </tr> <tr> <td>합 계</td> <td>3,425,451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과세표준	간주임대료	• 7.1. ~ 7.31. = 10,000,000원 × 1.8% × (31/365) = 15,287원	• 8.1. ~ 9.30. = 20,000,000원 × 1.8% × (61/365) = 60,164원	합 계	∴ 소계 = 75,451원	합 계	3,425,451원
구 분	과세표준																				
간주임대료	• 7.1. ~ 7.31. = 10,000,000원 × 1.6% × (31/365) = 13,589원																				
	• 8.1. ~ 9.30. = 20,000,000원 × 1.6% × (61/365) = 53,479원																				
합 계	∴ 소계 = 67,068원																				
합 계	3,417,068원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과세표준																				
간주임대료	• 7.1. ~ 7.31. = 10,000,000원 × 1.8% × (31/365) = 15,287원																				
	• 8.1. ~ 9.30. = 20,000,000원 × 1.8% × (61/365) = 60,164원																				
합 계	∴ 소계 = 75,451원																				
합 계	3,425,451원																				
511	⑩	[부가가치세신고서] 메뉴에서 ⑩ 간주임대료(과세표준 67,068원)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, 기타(정규영수증외매출분) 금액란에 “67,068”, 세액란에 “6,706” <sup>1)</sup> 를 입력한다. <sup>1)</sup> 소수점 이하 자리는 절사한다.	[부가가치세신고서] 메뉴에서 ⑩ 간주임대료(과세표준 75,451원)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, 기타(정규영수증외매출분) 금액란에 “75,451”, 세액란에 “7,545” <sup>1)</sup> 를 입력한다. <sup>1)</sup> 소수점 이하 자리는 절사한다.																		
536	문제 06	다음 임대차 관련 자료에 따라 ~ 작성하시오. (간주임대료에 대한 이자율은 1.6%로 가정함)	다음 임대차 관련 자료에 따라 ~ 작성하시오. (간주임대료에 대한 이자율은 1.8%로 가정함)																		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												
537	해설	(해설) · 간주임대료 = 보증금 40,000,000원 × 연 1.6% × (92/365)일 = 161,314원 <sup>1)</sup> <sup>1)</sup> 단수차이 1원 발생	(해설) · 간주임대료 = 보증금 40,000,000원 × 연 1.8% × (92/365)일 = 181,479원																								
769	(1) 1단계	(화면캡처에서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colspan="6">전 체 합 계</td> </tr> <tr> <td>월세등</td> <td>1,000,000</td> <td>간주임대료</td> <td>13,150</td> <td>과세표준(계)</td> <td>1,013,150</td> </tr> </table>	전 체 합 계						월세등	1,000,000	간주임대료	13,150	과세표준(계)	1,013,150	(화면캡처에서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colspan="6">전 체 합 계</td> </tr> <tr> <td>월세등</td> <td>1,000,000</td> <td>간주임대료</td> <td>14,794</td> <td>과세표준(계)</td> <td>1,014,794</td> </tr> </table>	전 체 합 계						월세등	1,000,000	간주임대료	14,794	과세표준(계)	1,014,794
전 체 합 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
월세등	1,000,000	간주임대료	13,150	과세표준(계)	1,013,150																						
전 체 합 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
월세등	1,000,000	간주임대료	14,794	과세표준(계)	1,014,794																						



## 5.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

### 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득세법 제55조 제1항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세율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</th> <th>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,200만원 이하</td> <td>6%</td> </tr> <tr> <td>1,200 ~ 4,600만원</td> <td>15%</td> </tr> <tr> <td>4,600 ~ 8,800만원</td> <td>24%</td> </tr> <tr> <td>8,800 ~ 1억5천만원</td> <td>35%</td> </tr> <tr> <td>1억5천만원 ~ 5억원</td> <td>38%</td> </tr> <tr> <td>5억원 초과</td> <td>4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과세표준	세율	1,200만원 이하	6%	1,200 ~ 4,600만원	15%	4,600 ~ 8,800만원	24%	8,800 ~ 1억5천만원	35%	1억5천만원 ~ 5억원	38%	5억원 초과	40%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세율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</th> <th>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,200만원 이하</td> <td>6%</td> </tr> <tr> <td>1,200 ~ 4,600만원</td> <td>15%</td> </tr> <tr> <td>4,600 ~ 8,800만원</td> <td>24%</td> </tr> <tr> <td>8,800 ~ 1억5천만원</td> <td>35%</td> </tr> <tr> <td>1억5천만원 ~ 3억원</td> <td>38%</td> </tr> <tr> <td>3억원 ~ 5억원</td> <td>40%</td> </tr> <tr> <td>5억원 초과</td> <td>42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과세표준	세율	1,200만원 이하	6%	1,200 ~ 4,600만원	15%	4,600 ~ 8,800만원	24%	8,800 ~ 1억5천만원	35%	1억5천만원 ~ 3억원	38%	3억원 ~ 5억원	40%	5억원 초과	42%	<개정이유>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
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200만원 이하	6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200 ~ 4,600만원	1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,600 ~ 8,800만원	24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,800 ~ 1억5천만원	3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억5천만원 ~ 5억원	38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억원 초과	4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200만원 이하	6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200 ~ 4,600만원	1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,600 ~ 8,800만원	24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,800 ~ 1억5천만원	3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억5천만원 ~ 3억원	38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억원 ~ 5억원	4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억원 초과	42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# 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						
556	(3)	개인의 부담능력은 ~ 소득세는 6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다. ~	개인의 부담능력은 ~ 소득세는 7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다. ~																		
561	해설 04	~ 소득세법은 6 ~ 40%의 6단계 초과누진제도를 취하나, ~	~ 소득세법은 6 ~ 42%의 7단계 초과누진제도를 취하나, ~																		
562	문제 06	③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시에는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6 ~ 40%의 6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.	③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시에는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6 ~ 42%의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.																		
565	(3)	·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: 기본세율(6 ~ 40%)	·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: 기본세율(6 ~ 42%)																		
582	문제 06	② 일용근로자의 산출세액은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(6 ~ 40%) 이 적용된다.	② 일용근로자의 산출세액은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(6 ~ 42%) 이 적용된다.																		
588	02 표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원천징수 여부</th> <th>원천징수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이자소득</td> <td>○</td> <td>·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: 기본세율(6 ~ 40%)</td> </tr> <tr> <td>퇴직소득</td> <td>○</td> <td>· 기본세율(6 ~ 40%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원천징수 여부	원천징수세율	이자소득	○	·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: 기본세율(6 ~ 40%)	퇴직소득	○	· 기본세율(6 ~ 40%)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원천징수 여부</th> <th>원천징수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이자소득</td> <td>○</td> <td>·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: 기본세율(6 ~ 42%)</td> </tr> <tr> <td>퇴직소득</td> <td>○</td> <td>· 기본세율(6 ~ 42%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원천징수 여부	원천징수세율	이자소득	○	·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: 기본세율(6 ~ 42%)	퇴직소득	○	· 기본세율(6 ~ 42%)
구분	원천징수 여부	원천징수세율																			
이자소득	○	·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: 기본세율(6 ~ 40%)																			
퇴직소득	○	· 기본세율(6 ~ 40%)																			
구분	원천징수 여부	원천징수세율																			
이자소득	○	·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: 기본세율(6 ~ 42%)																			
퇴직소득	○	· 기본세율(6 ~ 42%)																			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93	해설 05	②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%에서 최고 <b>40%</b> 까지 <b>6단계</b> 초과누진세율구조로 이루어져 있다.	②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%에서 최고 <b>42%</b> 까지 <b>7단계</b> 초과누진세율구조로 이루어져 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96	01 표	× 기본세율 · 6 ~ <b>40%</b> 의 <b>6단계</b> 초과누진세율	× 기본세율 · 6 ~ <b>42%</b> 의 <b>7단계</b> 초과누진세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07	02 표	<p>~ 다음과 같이 6 ~ <b>40%</b>의 <b>6단계</b>로 이루어져 있다.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</th> <th>기본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~</td><td>~</td></tr> <tr><td>~</td><td>~</td></tr> <tr><td>~</td><td>~</td></tr> <tr><td>~</td><td>~</td></tr> <tr> <td>1억 5,000만원 초과 <b>5억원</b> 이하</td> <td>3,760만원 + (과세표준 - 1억 5,000만원) × 38%</td> </tr> <tr> <td>5억원 초과</td> <td><b>1억 7,060만원</b> + (과세표준 - 5억원) × <b>40%</b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과세표준	기본세율	~	~	~	~	~	~	~	~	1억 5,000만원 초과 <b>5억원</b> 이하	3,760만원 + (과세표준 - 1억 5,000만원) × 38%	5억원 초과	<b>1억 7,060만원</b> + (과세표준 - 5억원) × <b>40%</b>	<p>~ 다음과 같이 6 ~ <b>42%</b>의 <b>7단계</b>로 이루어져 있다.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</th> <th>기본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~</td><td>~</td></tr> <tr><td>~</td><td>~</td></tr> <tr><td>~</td><td>~</td></tr> <tr><td>~</td><td>~</td></tr> <tr> <td>1억 5,000만원 초과 <b>3억원</b> 이하</td> <td>3,760만원 + (과세표준 - 1억 5,000만원) × 38%</td> </tr> <tr> <td><b>3억원 초과 5억원 이하</b></td> <td><b>9,460만원 + (과세표준 - 3억원) × 40%</b></td> </tr> <tr> <td>5억원 초과</td> <td><b>1억 7,460만원</b> + (과세표준 - 5억원) × <b>42%</b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과세표준	기본세율	~	~	~	~	~	~	~	~	1억 5,000만원 초과 <b>3억원</b> 이하	3,760만원 + (과세표준 - 1억 5,000만원) × 38%	<b>3억원 초과 5억원 이하</b>	<b>9,460만원 + (과세표준 - 3억원) × 40%</b>	5억원 초과	<b>1억 7,460만원</b> + (과세표준 - 5억원) × <b>42%</b>
과세표준	기본세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~	~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~	~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~	~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~	~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억 5,000만원 초과 <b>5억원</b> 이하	3,760만원 + (과세표준 - 1억 5,000만원) × 38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억원 초과	<b>1억 7,060만원</b> + (과세표준 - 5억원) × <b>40%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과세표준	기본세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~	~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~	~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~	~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~	~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억 5,000만원 초과 <b>3억원</b> 이하	3,760만원 + (과세표준 - 1억 5,000만원) × 38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3억원 초과 5억원 이하</b>	<b>9,460만원 + (과세표준 - 3억원) × 40%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억원 초과	<b>1억 7,460만원</b> + (과세표준 - 5억원) × <b>42%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책 23	3. 표	× 기본세율 · 6 ~ <b>40%</b> 의 <b>6단계</b> 초과누진세율	× 기본세율 · 6 ~ <b>42%</b> 의 <b>7단계</b> 초과누진세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책 35	기본세율 표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</th> <th>기본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~</td><td>~</td></tr> <tr><td>~</td><td>~</td></tr> <tr><td>~</td><td>~</td></tr> <tr><td>~</td><td>~</td></tr> <tr> <td>1억 5,000만원 초과 <b>5억원</b> 이하</td> <td>3,760만원 + (과세표준 - 1억 5,000만원) × 38%</td> </tr> <tr> <td>5억원 초과</td> <td><b>1억 7,060만원</b> + (과세표준 - 5억원) × <b>40%</b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과세표준	기본세율	~	~	~	~	~	~	~	~	1억 5,000만원 초과 <b>5억원</b> 이하	3,760만원 + (과세표준 - 1억 5,000만원) × 38%	5억원 초과	<b>1억 7,060만원</b> + (과세표준 - 5억원) × <b>40%</b>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</th> <th>기본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~</td><td>~</td></tr> <tr><td>~</td><td>~</td></tr> <tr><td>~</td><td>~</td></tr> <tr><td>~</td><td>~</td></tr> <tr> <td>1억 5,000만원 초과 <b>3억원</b> 이하</td> <td>3,760만원 + (과세표준 - 1억 5,000만원) × 38%</td> </tr> <tr> <td><b>3억원 초과 5억원 이하</b></td> <td><b>9,460만원 + (과세표준 - 3억원) × 40%</b></td> </tr> <tr> <td>5억원 초과</td> <td><b>1억 7,460만원</b> + (과세표준 - 5억원) × <b>42%</b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과세표준	기본세율	~	~	~	~	~	~	~	~	1억 5,000만원 초과 <b>3억원</b> 이하	3,760만원 + (과세표준 - 1억 5,000만원) × 38%	<b>3억원 초과 5억원 이하</b>	<b>9,460만원 + (과세표준 - 3억원) × 40%</b>	5억원 초과	<b>1억 7,460만원</b> + (과세표준 - 5억원) × <b>42%</b>
과세표준	기본세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~	~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~	~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~	~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~	~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억 5,000만원 초과 <b>5억원</b> 이하	3,760만원 + (과세표준 - 1억 5,000만원) × 38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억원 초과	<b>1억 7,060만원</b> + (과세표준 - 5억원) × <b>40%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과세표준	기본세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~	~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~	~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~	~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~	~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억 5,000만원 초과 <b>3억원</b> 이하	3,760만원 + (과세표준 - 1억 5,000만원) × 38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3억원 초과 5억원 이하</b>	<b>9,460만원 + (과세표준 - 3억원) × 40%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억원 초과	<b>1억 7,460만원</b> + (과세표준 - 5억원) × <b>42%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 6.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

### 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	<input type="checkbox"/> 비실명 이자·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○ <b>38%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비실명 이자·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○ <b>40%</b>	<개정이유> 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

### 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						
565	(3)	· 비실명 이자소득 : <b>38%</b> (금융실명거래 위반 시에는 90%)	· 비실명 이자소득 : <b>40%</b> (금융실명거래 위반 시에는 90%)																		
567	(4)	· 비실명 배당소득 : <b>38%</b> (금융실명거래 위반 시에는 90%)	· 비실명 배당소득 : <b>40%</b> (금융실명거래 위반 시에는 90%)																		
588	02 표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원천징수 여부</th> <th>원천징수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이자소득</td> <td>○</td> <td>· 비실명 이자소득 : <b>38%</b>(금융실명거래 위반 시에는 90%)</td> </tr> <tr> <td>배당소득</td> <td>○</td> <td>· 비실명 배당소득 : <b>38%</b>(금융실명거래 위반 시에는 90%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원천징수 여부	원천징수세율	이자소득	○	· 비실명 이자소득 : <b>38%</b> (금융실명거래 위반 시에는 90%)	배당소득	○	· 비실명 배당소득 : <b>38%</b> (금융실명거래 위반 시에는 90%)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원천징수 여부</th> <th>원천징수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이자소득</td> <td>○</td> <td>· 비실명 이자소득 : <b>40%</b>(금융실명거래 위반 시에는 90%)</td> </tr> <tr> <td>배당소득</td> <td>○</td> <td>· 비실명 배당소득 : <b>40%</b>(금융실명거래 위반 시에는 90%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원천징수 여부	원천징수세율	이자소득	○	· 비실명 이자소득 : <b>40%</b> (금융실명거래 위반 시에는 90%)	배당소득	○	· 비실명 배당소득 : <b>40%</b> (금융실명거래 위반 시에는 90%)
구분	원천징수 여부	원천징수세율																			
이자소득	○	· 비실명 이자소득 : <b>38%</b> (금융실명거래 위반 시에는 90%)																			
배당소득	○	· 비실명 배당소득 : <b>38%</b> (금융실명거래 위반 시에는 90%)																			
구분	원천징수 여부	원천징수세율																			
이자소득	○	· 비실명 이자소득 : <b>40%</b> (금융실명거래 위반 시에는 90%)																			
배당소득	○	· 비실명 배당소득 : <b>40%</b> (금융실명거래 위반 시에는 90%)																			

## 7. 장기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

### 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	<input type="checkbox"/> 장기채권의 이자소득 : 분리과세 신청가능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	<input type="checkbox"/> (삭제)	<개정이유>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제고

### 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
565	02 (3)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•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 : 30%<sup>2)</sup></p> <p><sup>2)</sup>법 소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에 대하여 소득귀속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.</p> </div>	(빨간색 글자 삭제)			
568	04 표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">무조건 분리과세</td> <td style="width: 70%;">•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</td> </tr> </table>	무조건 분리과세	•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	(빨간색 글자 삭제)	
무조건 분리과세	•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					
588	02 표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">이자소득</td> <td style="width: 10%; 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 style="width: 60%;">•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 : 30%</td> </tr> </table>	이자소득	○	•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 : 30%	(빨간색 글자 삭제)
이자소득	○	•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 : 30%				
592	문제 03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다.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</p> 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다. 비실명 이자소득(금융실명거래 위반은 아님)</p> </div>			
593	해설 03	가. ~ 나. ~ 다. 30% ~ 라. ~	가. ~ 나. ~ 다. 40% ~ 라. ~			

## 8. 사업소득의 범위 확대

### 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소득세법 제19조 제1항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소득의 범위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소득의 범위 ◦ <b>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(부동산 제외)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</b>	<개정이유> 사업소득 과세기반 확대

### ▶ 교재 수정 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			
557	기출 포인트	(기출포인트) 법령에 열거되지 않음에 따라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소득(미열거소득)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. • <b>상장주식 또는 채권의 양도차익</b> • <b>토지·건물 등이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</b>	(기출포인트) 법령에 열거되지 않음에 따라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소득(미열거소득)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. • <b>상장주식의 양도차익</b> • <b>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(부동산 제외) 양도차익</b>						
569	(5) 표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고정자산 처분이익</td> <td style="width: 5%; text-align: center;">×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처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, 이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각각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.</li> <li>• 만약 양도하는 유·무형자산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인 토지·건물 등 부동산 또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자산인 산업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, 동 자산의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자가 아니다. (과세제외) 예를 들어, 사업용 기계장치의 처분이익은 미열거소득으로서 과세대상자가 아니다.</li> </ul> </td> </tr> </table>	고정자산 처분이익	×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처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, 이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각각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.</li> <li>• 만약 양도하는 유·무형자산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인 토지·건물 등 부동산 또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자산인 산업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, 동 자산의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자가 아니다. (과세제외) 예를 들어, 사업용 기계장치의 처분이익은 미열거소득으로서 과세대상자가 아니다.</li> </ul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고정자산 처분이익</td> <td style="width: 5%; 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토지, 건물 등 부동산의 처분이익 : 양도소득으로 과세</li> <li>• 무형자산 중 광업권, 어업권, 산업재산권 등의 처분이익 : 기타소득으로 과세</li> <li>•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(부동산 제외) 처분이익 : 사업소득으로 과세</li> <li>• 그 밖의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차익 : 과세대상자가 아님 (미열거소득) (예)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용 기계장치 처분이익</li> </ul> </td> </tr> </table> <p>(용어 알아두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간편장부대상자</b> :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 (예. 제조업 :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)</li> <li>• <b>복식부기의무자</b> :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</li> </ul>	고정자산 처분이익	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토지, 건물 등 부동산의 처분이익 : 양도소득으로 과세</li> <li>• 무형자산 중 광업권, 어업권, 산업재산권 등의 처분이익 : 기타소득으로 과세</li> <li>•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(부동산 제외) 처분이익 : 사업소득으로 과세</li> <li>• 그 밖의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차익 : 과세대상자가 아님 (미열거소득) (예)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용 기계장치 처분이익</li> </ul>
고정자산 처분이익	×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처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, 이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각각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.</li> <li>• 만약 양도하는 유·무형자산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인 토지·건물 등 부동산 또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자산인 산업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, 동 자산의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자가 아니다. (과세제외) 예를 들어, 사업용 기계장치의 처분이익은 미열거소득으로서 과세대상자가 아니다.</li> </ul>							
고정자산 처분이익	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토지, 건물 등 부동산의 처분이익 : 양도소득으로 과세</li> <li>• 무형자산 중 광업권, 어업권, 산업재산권 등의 처분이익 : 기타소득으로 과세</li> <li>•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(부동산 제외) 처분이익 : 사업소득으로 과세</li> <li>• 그 밖의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차익 : 과세대상자가 아님 (미열거소득) (예)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용 기계장치 처분이익</li> </ul>							
570	(8)	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중 간편장부대상자(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,500만원 <b>이하</b> )에 해당하는 ~	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중 간편장부대상자(직전 연도 수입금액 7,500만원 <b>미만</b> )에 해당하는 ~						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
571	기출 확인 문제	(기출확인문제) ① <b>사업용고정자산의</b> 양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은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.	(기출확인문제) ① <b>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(부동산 제외)의</b> 양도로 인해 발생한 처분이익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.
578	기출 확인 문제	(기출확인문제) ③ 제조업자의 유형자산인 트럭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1,000만원의 <b>매매차익</b>  (해설) <b>토지·건물 등이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의</b> 처분이익은 미열거소득이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.	(기출확인문제) ③ <b>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</b> 제조업자의 유형자산인 트럭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1,000만원의 <b>처분이익</b>  (해설) <b>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(부동산 제외)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</b> 처분이익은 미열거소득이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.

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								
192	문제 18	<p>[18] 8월 18일 생산직 직원을 위한 워크숍에 초청된 강사 ~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지급총액</th> <th>필요경비</th> <th>소득금액</th> <th>세율</th> <th>소득세, 지방소득세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800,000원</td> <td>640,000원</td> <td>160,000원</td> <td>20%</td> <td>35,2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(정답) 8월 18일 (차) 교육훈련비(제조) 800,000 (대) 현금 764,800 예수금 35,200</p>	지급총액	필요경비	소득금액	세율	소득세, 지방소득세	800,000원	640,000원	160,000원	20%	35,200원	<p>[18] 8월 18일 생산직 직원을 위한 워크숍에 초청된 강사 ~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지급총액</th> <th>필요경비</th> <th>소득금액</th> <th>세율</th> <th>소득세, 지방소득세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800,000원</td> <td>560,000원</td> <td>240,000원</td> <td>20%</td> <td>52,8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(정답) 8월 18일 (차) 교육훈련비(제조) 800,000 (대) 현금 747,200 예수금 52,800</p>	지급총액	필요경비	소득금액	세율	소득세, 지방소득세	800,000원	560,000원	240,000원	20%	52,800원
지급총액	필요경비	소득금액	세율	소득세, 지방소득세																			
800,000원	640,000원	160,000원	20%	35,200원																			
지급총액	필요경비	소득금액	세율	소득세, 지방소득세																			
800,000원	560,000원	240,000원	20%	52,800원																			
575	(1) 표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양도 또는 대여로 얻는 소득</td> <td>• 지상권·지역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</td> </tr> <tr> <td>그 외 소득</td> <td>• 뇌물,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</td> </tr> </table>	양도 또는 대여로 얻는 소득	• 지상권·지역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	그 외 소득	• 뇌물,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양도 또는 대여로 얻는 소득</td> <td>• <b>공익사업과 관련하여</b> 지상권·지역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</td> </tr> <tr> <td>그 외 소득</td> <td>• 뇌물,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• <b>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(종교인 소득)</b></td> </tr> </table> <p>(파란색 글자 추가)</p>	양도 또는 대여로 얻는 소득	• <b>공익사업과 관련하여</b> 지상권·지역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	그 외 소득	• 뇌물,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• <b>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(종교인 소득)</b>												
양도 또는 대여로 얻는 소득	• 지상권·지역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																						
그 외 소득	• 뇌물,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																						
양도 또는 대여로 얻는 소득	• <b>공익사업과 관련하여</b> 지상권·지역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																						
그 외 소득	• 뇌물,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• <b>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(종교인 소득)</b>																						
576	(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가보안법, 상훈법 등에 따라 받는 상금과 부상</li> <li>•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회사로부터 퇴직 후에 받는 보상금 중 연 300만원 이내의 금액</li> <li>•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·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</li> <li>• 서화·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가보안법, 상훈법 등에 따라 받는 상금과 부상</li> <li>•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회사로부터 퇴직 후에 받는 보상금 중 연 300만원 이내의 금액</li> <li>•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·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</li> <li>• 서화·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</li> <li>• <b>종교인 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법 소정 금액</b></li> </ul> <p>(파란색 글자 추가)</p>																				

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								
577	(4) 표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필요경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금·현상금·포상금 중에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~</li> <li>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~</li> </ul> </li> <li>광업권, 어업권, 산업재산권 등을 ~</li> <li>지상권·지역권을 설정 ~</li> <li>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~</li> <li>문예창작소득</li> <li>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</li> <li>서화·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</li> </ul> </td> <td>         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 <math>= \text{Max}[\text{㉠}, \text{㉡}]</math>            ㉠ 총수입금액 × 80%<sup>1)</sup>            ㉡ 실제 발생 금액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• 승마투표권·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~</td> <td>~</td> </tr> <tr> <td>• 슬롯머신 등의 ~</td> <td>~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<sup>1)</sup> 서화·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90%</p>	구분	필요경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금·현상금·포상금 중에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~</li> <li>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~</li> </ul> </li> <li>광업권, 어업권, 산업재산권 등을 ~</li> <li>지상권·지역권을 설정 ~</li> <li>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~</li> <li>문예창작소득</li> <li>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</li> <li>서화·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</li> </ul>	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$= \text{Max}[\text{㉠}, \text{㉡}]$ ㉠ 총수입금액 × 80% <sup>1)</sup> ㉡ 실제 발생 금액	• 승마투표권·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~	~	• 슬롯머신 등의 ~	~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필요경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금·현상금·포상금 중에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~</li> <li>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~</li> </ul> </li> <li>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~</li> <li>광업권, 어업권, 산업재산권 등을 ~</li> <li>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·지역권을 설정 ~</li> <li>문예창작소득</li> <li>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</li> </ul> </td> <td>         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 <math>= \text{Max}[\text{㉠}, \text{㉡}]</math>            ㉠ 총수입금액 × 80%            ㉡ 실제 발생 금액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• 서화·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</td> <td>         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 <math>= \text{Max}[\text{㉠}, \text{㉡}]</math>            ㉠ 총수입금액 × 80%(90%)<sup>1)</sup>            ㉡ 실제 발생 금액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•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</td> <td>         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 <math>= \text{Max}[\text{㉠}, \text{㉡}]</math>            ㉠ 총수입금액 × (20%~80%)            ㉡ 실제 발생 금액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• 승마투표권·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~</td> <td>~</td> </tr> <tr> <td>• 슬롯머신 등의 ~</td> <td>~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<sup>1)</sup> 서화·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90%</p>	구분	필요경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금·현상금·포상금 중에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~</li> <li>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~</li> </ul> </li> <li>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~</li> <li>광업권, 어업권, 산업재산권 등을 ~</li> <li>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·지역권을 설정 ~</li> <li>문예창작소득</li> <li>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</li> </ul>	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$= \text{Max}[\text{㉠}, \text{㉡}]$ ㉠ 총수입금액 × 80% ㉡ 실제 발생 금액	• 서화·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	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$= \text{Max}[\text{㉠}, \text{㉡}]$ ㉠ 총수입금액 × 80%(90%) <sup>1)</sup> ㉡ 실제 발생 금액	•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	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$= \text{Max}[\text{㉠}, \text{㉡}]$ ㉠ 총수입금액 × (20%~80%) ㉡ 실제 발생 금액	• 승마투표권·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~	~	• 슬롯머신 등의 ~	~
구분	필요경비						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금·현상금·포상금 중에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~</li> <li>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~</li> </ul> </li> <li>광업권, 어업권, 산업재산권 등을 ~</li> <li>지상권·지역권을 설정 ~</li> <li>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~</li> <li>문예창작소득</li> <li>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</li> <li>서화·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</li> </ul>	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$= \text{Max}[\text{㉠}, \text{㉡}]$ ㉠ 총수입금액 × 80% <sup>1)</sup> ㉡ 실제 발생 금액																						
• 승마투표권·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~	~																						
• 슬롯머신 등의 ~	~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필요경비						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금·현상금·포상금 중에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~</li> <li>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~</li> </ul> </li> <li>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~</li> <li>광업권, 어업권, 산업재산권 등을 ~</li> <li>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·지역권을 설정 ~</li> <li>문예창작소득</li> <li>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</li> </ul>	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$= \text{Max}[\text{㉠}, \text{㉡}]$ ㉠ 총수입금액 × 80% ㉡ 실제 발생 금액																						
• 서화·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	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$= \text{Max}[\text{㉠}, \text{㉡}]$ ㉠ 총수입금액 × 80%(90%) <sup>1)</sup> ㉡ 실제 발생 금액																						
•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	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$= \text{Max}[\text{㉠}, \text{㉡}]$ ㉠ 총수입금액 × (20%~80%) ㉡ 실제 발생 금액																						
• 승마투표권·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~	~																						
• 슬롯머신 등의 ~	~																						
577	(7) [사례1]	<p>[사례1]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(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)을 하고 강연료로서 <b>200,000원</b>을 받는 경우</p> <p>[풀 이] 기타소득금액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 = <b>200,000원</b> - (200,000원 × 80%) = <b>40,000원</b></p> <p>∴ 기타소득금액이 <b>40,000원</b>이므로 과세최저한(건별 기타소득금액 50,000원 이하)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0원(즉,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면 됨)</p>	<p>[사례1]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(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)을 하고 강연료로서 <b>150,000원</b>을 받는 경우</p> <p>[풀 이] 기타소득금액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 = <b>150,000원</b> - (150,000원 × 70%) = <b>45,000원</b></p> <p>∴ 기타소득금액이 <b>45,000원</b>이므로 과세최저한(건별 기타소득금액 50,000원 이하)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0원(즉,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면 됨)</p>																				
577	(7) [사례2]	<p>[사례2]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(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)을 하고 강연료로서 500,000원을 받는 경우</p> <p>[풀 이] 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은 총수입금액의 <b>80%</b>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.</p> <p>∴ 기타소득금액 × 20% = {500,000원 - (500,000원 × 80%) } × 20% = <b>20,000원</b></p>	<p>[사례2]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(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)을 하고 강연료로서 500,000원을 받는 경우</p> <p>[풀 이] 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은 총수입금액의 <b>70%</b>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.</p> <p>∴ 기타소득금액 × 20% = {500,000원 - (500,000원 × 70%) } × 20% = <b>30,000원</b></p>																				
578	(7) [사례3]	<p>[사례3] 사례금으로 500,000원을 받는 경우</p> <p>[풀 이] 사례금은 총수입금액의 <b>80%</b>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아니다.</p> <p>∴ 기타소득금액 × 20% = (500,000원 - 0원) × 20% = 100,000원</p>	<p>[사례3] 사례금으로 500,000원을 받는 경우</p> <p>[풀 이] 사례금은 총수입금액의 <b>70%</b>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아니다.</p> <p>∴ 기타소득금액 × 20% = (500,000원 - 0원) × 20% = 100,000원</p>																				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
593	해설 04	[04] ~ ③ <b>40,000원</b> (= 4% = 소득금액의 20%)	[04] ~ ③ <b>60,000원</b> (= 6% = 소득금액의 20%)								
594	문제 07	③ 지역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	③ <b>공익사업과 관련하여</b> 지역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								
594	문제 08	<p>[08] 대학교수인 김태환씨가 일시적으로 공무원교육기관에서 ~</p> <p>① 기타소득 <b>52,800원</b></p> <p>② 사업소득 <b>52,800원</b></p> <p>③ 기타소득 152,800원</p> <p>④ 사업소득 152,300원</p> <p>(해설) 기타소득금액 = 1,200,000원 - (1,200,000원 × 80%<sup>1)</sup>) = <b>240,000원</b>  ∴ 원천징수세액(지방소득세 포함) = <b>240,000원</b> × 20% × 1.1 = <b>52,800원</b>  <sup>1)</sup> 고용 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, 수입금액의 <b>80%</b>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.</p>	<p>[08] 대학교수인 김태환씨가 일시적으로 공무원교육기관에서 ~</p> <p>① 기타소득 <b>79,200원</b></p> <p>② 사업소득 <b>79,200원</b></p> <p>③ 기타소득 152,800원</p> <p>④ 사업소득 152,300원</p> <p>(해설) 기타소득금액 = 1,200,000원 - (1,200,000원 × 70%<sup>1)</sup>) = <b>360,000원</b>  ∴ 원천징수세액(지방소득세 포함) = <b>360,000원</b> × 20% × 1.1 = <b>79,200원</b>  <sup>1)</sup> 고용 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, 수입금액의 <b>70%</b>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.</p>								
597	(1) 하단 표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타소득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복권당첨소득이 있는 경우(이유 : 분리과세)</li> <li>•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령액이 <b>500만원</b> 이하인 경우 (이유 : 기타소득금액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 = <b>500만원 - 500만원 × 80% = 100만원</b>)</li> <li>•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~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	기타소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복권당첨소득이 있는 경우(이유 : 분리과세)</li> <li>•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령액이 <b>500만원</b> 이하인 경우 (이유 : 기타소득금액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 = <b>500만원 - 500만원 × 80% = 100만원</b>)</li> <li>•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~</li> </ul>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타소득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복권당첨소득이 있는 경우(이유 : 분리과세)</li> <li>•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령액이 <b>333만원</b> 이하인 경우 (이유 : 기타소득금액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 = <b>333만원 - 333만원 × 70% = 99만원</b>)</li> <li>•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~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	기타소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복권당첨소득이 있는 경우(이유 : 분리과세)</li> <li>•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령액이 <b>333만원</b> 이하인 경우 (이유 : 기타소득금액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 = <b>333만원 - 333만원 × 70% = 99만원</b>)</li> <li>•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~</li> </ul>
구 분	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										
기타소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복권당첨소득이 있는 경우(이유 : 분리과세)</li> <li>•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령액이 <b>500만원</b> 이하인 경우 (이유 : 기타소득금액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 = <b>500만원 - 500만원 × 80% = 100만원</b>)</li> <li>•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~</li> </ul>										
구 분	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										
기타소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복권당첨소득이 있는 경우(이유 : 분리과세)</li> <li>•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령액이 <b>333만원</b> 이하인 경우 (이유 : 기타소득금액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 = <b>333만원 - 333만원 × 70% = 99만원</b>)</li> <li>•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~</li> </ul>										
610	문제 01	<p>[01]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~</p> <p>② 고용 관계 없이 기업체에서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강연료로 받은 <b>1,600만원</b>만 있는 자</p> <p>(해설) ~</p> <p>(참고) 일시적인 강연료의 기타소득금액 = <b>1,600만원 - 1,600만원 × 80% = 320만원</b></p>	<p>[01]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~</p> <p>② 고용 관계 없이 기업체에서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강연료로 받은 <b>1,200만원</b>만 있는 자</p> <p>(해설) ~</p> <p>(참고) 일시적인 강연료의 기타소득금액 = <b>1,200만원 - 1,200만원 × 70% = 360만원</b></p>								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
별책 6	문제 19	<p>[19] 7월 19일 영업사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강사 강연료에 ~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• 지급총액 : 3,000,000원</td> <td>• 필요경비 : 지급총액의 <b>80%</b></td> </tr> <tr> <td>• 소득세율 : 20%</td> <td>• 지방소득세 : 소득세의 10%</td> </tr> </table> <p>(정답) 7월 19일 (차) 교육훈련비(판관비) 3,000,000 (대) 예수금 <b>132,000<sup>1)</sup></b> 현금 <b>2,868,000</b></p> <p><sup>1)</sup> •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= {3,000,000원 - (3,000,000원 × 80%) } × 20% = <b>120,000원</b> •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= <b>120,000원</b> × 10% = <b>12,000원</b> ∴ 원천징수세액 합계 = <b>120,000 + 12,000 = 132,000원</b></p>	• 지급총액 : 3,000,000원	• 필요경비 : 지급총액의 <b>80%</b>	• 소득세율 : 20%	• 지방소득세 : 소득세의 10%	<p>[19] 7월 19일 영업사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강사 강연료에 ~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• 지급총액 : 3,000,000원</td> <td>• 필요경비 : 지급총액의 <b>70%</b></td> </tr> <tr> <td>• 소득세율 : 20%</td> <td>• 지방소득세 : 소득세의 10%</td> </tr> </table> <p>(정답) 7월 19일 (차) 교육훈련비(판관비) 3,000,000 (대) 예수금 <b>198,000<sup>1)</sup></b> 현금 <b>2,802,000</b></p> <p><sup>1)</sup> •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= {3,000,000원 - (3,000,000원 × 70%) } × 20% = <b>180,000원</b> •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= <b>180,000원</b> × 10% = <b>18,000원</b> ∴ 원천징수세액 합계 = <b>180,000 + 18,000 = 198,000원</b></p>	• 지급총액 : 3,000,000원	• 필요경비 : 지급총액의 <b>70%</b>	• 소득세율 : 20%	• 지방소득세 : 소득세의 10%
• 지급총액 : 3,000,000원	• 필요경비 : 지급총액의 <b>80%</b>										
• 소득세율 : 20%	• 지방소득세 : 소득세의 10%										
• 지급총액 : 3,000,000원	• 필요경비 : 지급총액의 <b>70%</b>										
• 소득세율 : 20%	• 지방소득세 : 소득세의 10%										
별책 27	㉔ 표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타소득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복권당첨소득이 있는 경우(이유 : 분리과세)</li> <li>•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령액이 <b>500만원</b> 이하인 경우(이유 :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</li> <li>•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(이유 : 분리과세)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	기타소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복권당첨소득이 있는 경우(이유 : 분리과세)</li> <li>•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령액이 <b>500만원</b> 이하인 경우(이유 :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</li> <li>•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(이유 : 분리과세)</li> </ul>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타소득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복권당첨소득이 있는 경우(이유 : 분리과세)</li> <li>•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령액이 <b>333만원</b> 이하인 경우(이유 :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</li> <li>•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(이유 : 분리과세)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	기타소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복권당첨소득이 있는 경우(이유 : 분리과세)</li> <li>•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령액이 <b>333만원</b> 이하인 경우(이유 :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</li> <li>•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(이유 : 분리과세)</li> </ul>
구 분	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										
기타소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복권당첨소득이 있는 경우(이유 : 분리과세)</li> <li>•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령액이 <b>500만원</b> 이하인 경우(이유 :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</li> <li>•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(이유 : 분리과세)</li> </ul>										
구 분	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										
기타소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복권당첨소득이 있는 경우(이유 : 분리과세)</li> <li>•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령액이 <b>333만원</b> 이하인 경우(이유 :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</li> <li>•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(이유 : 분리과세)</li> </ul>										
별책 27	사례	<p>[사례] 소득금액 요건 판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양가족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수령액이 <b>1,000만원</b>이 있고, 해당 기타 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: 기본공제 O</li> </ul> <p>[이유]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는 <b>80%</b>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, 기타소득 금액은 대가수령액 <b>1,000만원</b>의 <b>20%</b>인 <b>200만원</b>이고,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(선택적 분리과세)</p>	<p>[사례] 소득금액 요건 판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양가족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수령액이 <b>800만원</b>이 있고, 해당 기타 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: 기본공제 O</li> </ul> <p>[이유]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는 <b>70%</b>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, 기타소득 금액은 대가수령액 <b>800만원</b>의 <b>30%</b>인 <b>240만원</b>이고,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(선택적 분리과세)</p>								

## 10. 자녀세액공제 조정

### 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소득세법 제59조의2조	<input type="checkbox"/> 자녀세액공제(6세 이하)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6세 이하 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 : 15만원 × (자녀수 - 1명)	<input type="checkbox"/> 자녀세액공제(6세 이하 - 삭제)	<개정이유>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조정

### 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
596	01 표	<table border="1"> <tr> <td>-</td> <td>세액공제</td> <td>• 자녀세액공제(다자녀, 6세 이하, 출산·입양)</td> </tr> </table>	-	세액공제	• 자녀세액공제(다자녀, 6세 이하, 출산·입양)	<table border="1"> <tr> <td>-</td> <td>세액공제</td> <td>• 자녀세액공제(다자녀, 출산·입양)</td> </tr> </table> (빨간색 글자 삭제)	-	세액공제	• 자녀세액공제(다자녀, 출산·입양)		
-	세액공제	• 자녀세액공제(다자녀, 6세 이하, 출산·입양)									
-	세액공제	• 자녀세액공제(다자녀, 출산·입양)									
598	(2) 표	<table border="1"> <tr> <td>6세 이하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명 : -</li> <li>• 2명 이상 : 15만원 × (자녀수 - 1명)</li> </ul> </td> </tr> </table>	6세 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명 : -</li> <li>• 2명 이상 : 15만원 × (자녀수 - 1명)</li> </ul>	(빨간색 글자 삭제)						
6세 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명 : -</li> <li>• 2명 이상 : 15만원 × (자녀수 - 1명)</li> </ul>										
602	04 표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세액공제</td> <td>자녀세액공제(다자녀, 6세 이하, 출산·입양)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/tr> </table>	세액공제	자녀세액공제(다자녀, 6세 이하, 출산·입양)	○	○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세액공제</td> <td>자녀세액공제(다자녀, 출산·입양)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/tr> </table> (빨간색 글자 삭제)	세액공제	자녀세액공제(다자녀, 출산·입양)	○	○
세액공제	자녀세액공제(다자녀, 6세 이하, 출산·입양)	○	○								
세액공제	자녀세액공제(다자녀, 출산·입양)	○	○								
605	문제 04	<p>[04]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에서 ~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</li> <li>②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</li> <li>③ 교육비세액공제</li> <li>④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</li> </ol> <p>(해설)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이다.</p>	<p>[04]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에서 ~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</li> <li>② 출산·입양 자녀세액공제</li> <li>③ 교육비세액공제</li> <li>④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</li> </ol> <p>(해설) 출산·입양 자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이다.</p>								
619	(1) ㉠	<p>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명 있고 그 중 6세 이하인 자녀는 1명이므로, 다자녀 세액공제는 적용되나 6세 이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.</p>	<p>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으므로 다자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.</p>								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			
663	해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6세 이하이고 2017년에</b> 입양하였으므로, 김윤우는 기본공제 · 다자녀 세액공제 · <b>6세 이하 세액공제</b> ·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모두 가능하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올해에</b> 입양하였으므로, 김윤우는 기본공제 · 다자녀 세액공제 ·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모두 가능하다.</li> </ul> (빨간색 글자 삭제)						
별책 23	3. 표	<table border="1"> <tr> <td>-</td> <td>세액공제</td> <td>• 자녀세액공제(다자녀, <b>6세 이하</b>, 출산·입양)</td> </tr> </table>	-	세액공제	• 자녀세액공제(다자녀, <b>6세 이하</b> , 출산·입양)	<table border="1"> <tr> <td>-</td> <td>세액공제</td> <td>• 자녀세액공제(다자녀, 출산·입양)</td> </tr> </table> (빨간색 글자 삭제)	-	세액공제	• 자녀세액공제(다자녀, 출산·입양)
-	세액공제	• 자녀세액공제(다자녀, <b>6세 이하</b> , 출산·입양)							
-	세액공제	• 자녀세액공제(다자녀, 출산·입양)							
별책 30	3. 표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예 외</td> <td>• <b>6세 이하 : 2011. 1. 1. 이후 출생(∵ 2017년 - 6세 = 2011년)</b></td> </tr> </table>	예 외	• <b>6세 이하 : 2011. 1. 1. 이후 출생(∵ 2017년 - 6세 = 2011년)</b>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예 외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 (빨간색 글자 삭제)	예 외			
예 외	• <b>6세 이하 : 2011. 1. 1. 이후 출생(∵ 2017년 - 6세 = 2011년)</b>								
예 외									
별책 36	2.	2. 자녀세액공제(= 다자녀 + <b>6세 이하</b> + 출산·입양)	2. 자녀세액공제(= 다자녀 + 출산·입양) (빨간색 글자 삭제)						
별책 37	2. (2)	<b>(2) 6세 이하 세액공제</b> ~	(삭제)						

## 11.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

### 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소득세법 제59의4조 제2항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 한도 없는 의료비 ○ 본인, 65세 이상, 장애인, 난임시술비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 한도 없는 의료비 ○ 본인, 65세 이상, 장애인, <b>중증질환자</b> , 난임시술비	<개정이유>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

### 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
599	(2) 표	세액공제액 ㉠ 본인 등 의료비 : 본인, 65세 이상, 장애인, 난임시술비	세액공제액 ㉠ 본인 등 의료비 : 본인, 65세 이상, 장애인, <b>중증질환자</b> , 난임시술비
별책 39	(3) ①	※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KcLep에 인정되는 의료비를 공제대상별(본인, 65세 이상, 장애인, 난임시술비, 일반)로 구분하여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된다.	※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KcLep에 인정되는 의료비를 공제대상별(본인, 65세 이상, 장애인, <b>중증질환자</b> , 난임시술비, 일반)로 구분하여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된다.
별책 39	(3) ② 표	세액공제대상 의료비 ㉠ 본인 등 의료비 : 본인, 65세 이상, 장애인, 난임시술비	세액공제대상 의료비 ㉠ 본인 등 의료비 : 본인, 65세 이상, 장애인, <b>중증질환자</b> , 난임시술비

## 12.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

### 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조세특례제한법 제95의2조	<input type="checkbox"/>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 ○ 10%	<input type="checkbox"/>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 ○ 10% ○ 총급여액 5,500만원 이하인 경우 : 12%	<개정이유>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

### 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	
600	(6) 표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세액공제액</td> <td>월세액 세액공제액 = Min[공제대상금액, 750만원] × 10%</td> </tr> </table>	세액공제액	월세액 세액공제액 = Min[공제대상금액, 750만원] × 10%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세액공제액</td> <td>월세액 세액공제액 = Min[공제대상금액, 750만원] × 10%<sup>1)</sup></td> </tr> </table> <p><sup>1)</sup>총급여액 5,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%</p>	세액공제액	월세액 세액공제액 = Min[공제대상금액, 750만원] × 10% <sup>1)</sup>
세액공제액	월세액 세액공제액 = Min[공제대상금액, 750만원] × 10%						
세액공제액	월세액 세액공제액 = Min[공제대상금액, 750만원] × 10% <sup>1)</sup>						
별책 44	7. (1)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월세액 세액공제액</td> <td>= Min[① 공제대상금액, ② 연 750만원] × 10%</td> </tr> </table>	월세액 세액공제액	= Min[① 공제대상금액, ② 연 750만원] × 10%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월세액 세액공제액</td> <td>= Min[① 공제대상금액, ② 연 750만원] × 10%<sup>1)</sup></td> </tr> </table> <p><sup>1)</sup>총급여액 5,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%</p>	월세액 세액공제액	= Min[① 공제대상금액, ② 연 750만원] × 10% <sup>1)</sup>
월세액 세액공제액	= Min[① 공제대상금액, ② 연 750만원] × 10%						
월세액 세액공제액	= Min[① 공제대상금액, ② 연 750만원] × 10% <sup>1)</sup>						

### 13.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

#### 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율 ○ 일반 신용카드 : 15% ○ 직불카드, 현금영수증 : 30% ○ 전통시장, 대중교통 : <b>30%</b>  <input type="checkbox"/> 한도 : 200 ~ 300만원 ○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각각 100만원 추가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율 ○ 일반 신용카드 : 15% ○ 직불카드, 현금영수증 : 30% ○ <b>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·공연비 지출분 : 30%</b> ○ 전통시장, 대중교통 : <b>40%</b>  <input type="checkbox"/> 한도 : 200 ~ 300만원 ○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각각 100만원 추가 ○ <b>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·공연비 지출분은 100만원 추가</b>	<개정이유> 내수활성화 도모 및 국민 문화생활 지원

#### 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
600	(7) 표	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액 = Min[①, ②] + ③ ① 기본공제대상금액 : (㉠ + ㉡) ㉠ (일반 신용카드 - 총급여액 × 25% <sup>2)</sup> ) × 15% ㉡ (전통시장 + 대중교통 + 직불카드·현금영수증 - 총급여액 × 25% <sup>2)</sup> ) × 30% ② 기본공제한도금액 : Min(㉢ 연 300만원 <sup>3)</sup> , ㉣ 총급여액 × 20%) ③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에 대한 추가공제액 : Min(㉤, ㉥) ㉤ 기본공제한도초과액 ㉥ ㉠ 전통시장 × 30%(연 100만원 한도) + ㉡ 대중교통 × 30%(연 100만원 한도)	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액 = Min[①, ②] + ③ ① 기본공제대상금액 : (㉠ + ㉡ + ㉢) ㉠ (일반 신용카드 - 총급여액 × 25% <sup>2)</sup> ) × 15% ㉡ (직불카드·현금영수증 +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·공연비 - 총급여액 × 25% <sup>2)</sup> ) × 30% ㉢ (전통시장 + 대중교통 - 총급여액 × 25% <sup>2)</sup> ) × 40% ② 기본공제한도금액 : Min(㉣ 연 300만원 <sup>3)</sup> , ㉤ 총급여액 × 20%) ③ 도서·공연비, 전통시장, 대중교통에 대한 추가공제액 : Min(㉥, ㉦) ㉥ 기본공제한도초과액 ㉦ 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·공연비 × 30%(연 100만원 한도) + ㉡ 전통시장 × 40%(연 100만원 한도) + ㉢ 대중교통 × 40%(연 100만원 한도)
별책 34	(3) 표	2) '총급여액 × 25%'는 일반 신용카드에서 먼저 차감하고, 그 다음에 직불카드·현금영수증, 전통시장, 대중교통 순서대로 차감한다. 3) 총급여 1.2억원 초과하는 자는 200만원이다.	2) 기본공제대상금액(①)을 계산할 때, '총급여액 × 25%'는 공제율이 낮은 것에서부터 순서대로(㉠ → ㉡ → ㉢) 차감한다. 3)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,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,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이다.

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
별책 35	실기 포인트	<p>(실기포인트)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액은 인정되는 카드 형태별(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직불카드), 사용 내역별(일반, 전통시장, 대중교통)로 공제액이 달라진다. 따라서 [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] 메뉴에 신용카드 등 공제 대상금액을 입력할 때에는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을 형태별·사용 내역별에 맞게 그 지출액을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한다.</p>	<p>(실기포인트)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액은 인정되는 카드 형태별(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직불카드), 사용 내역별(일반, <b>도서·공연비</b>, 전통시장, 대중교통)로 공제액이 달라진다. 따라서 [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] 메뉴에 신용카드 등 공제 대상금액을 입력할 때에는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을 형태별·사용 내역별에 맞게 그 지출액을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한다.</p>

## 14.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요건 완화

### 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	<input type="checkbox"/> 초과근로수당 중 연24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 ○ 생산직근로자 ○ 직전연도 총급여액 2,500만원 이하 ○ 월정액급여액 월 <b>150만원</b> 이하	<input type="checkbox"/> 초과근로수당 중 연24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 ○ 생산직근로자 ○ 직전연도 총급여액 2,500만원 이하 ○ 월정액급여액 월 <b>190만원</b> 이하	<개정이유>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향조정

### 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
625	표	야간근로수당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~ ·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것일 것 ·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2,500만원 이하일 것 · 월정액급여액이 월 <b>150만원</b> 이하일 것 (참고) 월정급여액	야간근로수당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~ ·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것일 것 ·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2,500만원 이하일 것 · 월정액급여액이 월 <b>190만원</b> 이하일 것 (참고) 월정급여액
667	해설	· 생산직 사원이고,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2,500만원 이하로서, 월정액급여액이 월 <b>150만원</b> 이하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은 연 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항목이다.	· 생산직 사원이고,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2,500만원 이하로서, 월정액급여액이 월 <b>190만원</b> 이하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은 연 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항목이다.
별책 24	(4) ③	· 비과세 요건 : ㉠ 생산직이고, ㉡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2,500만원 이하로서, ㉢ 월정액급여액 <sup>1)</sup> 이 월 <b>150만원</b> 이하	· 비과세 요건 : ㉠ 생산직이고, ㉡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2,500만원 이하로서, ㉢ 월정액급여액 <sup>1)</sup> 이 월 <b>190만원</b> 이하

## 15.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 추가

### 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정기부금단체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정기부금단체(추가) ○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	<개정이유> 어린이집에 대한 기부 활성화 지원

### 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
600	(4) 표	<p>공제대상</p> <p>기본공제대상자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)가 ~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법 정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</li> <li>· 국·공립·사립학교 등에 지급하는 ~</li> <li>· 사회복지공동모금회, 대한적십자사</li> <li>· 정치자금기부금으로서 10만원을 ~</li> </ul> </li> <li>• 지 정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종교단체, 사회복지법인, 불우이웃돕기성금, 노동조합 회비</li> <li>· 학교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교육비·장학금·연구비</li> </ul> </li> </ul>	<p>공제대상</p> <p>기본공제대상자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)가 ~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법 정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</li> <li>· 국·공립·사립학교 등에 지급하는 ~</li> <li>· 사회복지공동모금회, 대한적십자사</li> <li>· 정치자금기부금으로서 10만원을 ~</li> </ul> </li> <li>• 지 정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종교단체, 사회복지법인, <b>어린이집</b>, 불우이웃돕기성금, 노동조합 회비</li> <li>· 학교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교육비·장학금·연구비</li> </ul> </li> </ul>
별책 42	③ 표	<p>지정기부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법에 열거된 비영리<b>법인</b>(예. 사회복지법인) 또는 국제기구(예. 유엔난민기구)에 지급하는 기부금</li> </ul>	<p>지정기부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법에 열거된 비영리<b>단체</b>(예. 사회복지법인, <b>어린이집</b>) 또는 국제기구(예. 유엔난민기구)에 지급하는 기부금</li> </ul>

## 16. 혼인세액공제 삭제

### 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(안)	<input type="checkbox"/> 혼인세액공제액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하는 본인이 당해 연도에 혼인을 한 경우 5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	<input type="checkbox"/> (삭제)	<개정이유> 개선안 발표 예정

### 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	
598	(3)	(3) 혼인세액공제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이 5,500만원 이하 ~	(삭제)				
598	(4)	(4) 인적공제, 자녀세액공제, 혼인세액공제 판단 시 기준시점	(4) 인적공제, 자녀세액공제 판단 시 기준시점 (빨간색 글자 삭제)				
602	04 표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세액공제</td> <td>혼인세액공제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/tr> </table>	세액공제	혼인세액공제	○	○	(삭제)
세액공제	혼인세액공제	○	○				
602	기출 포인트	(기출포인트) 근로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다음과 같다. <table border="1"> <tr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인적공제</li> <li>· 자녀세액공제</li> <li>· 혼인세액공제</li> <li>· 연금 관련 공제( ~ )</li> <li>· 기부금 관련 공제( ~ )</li> </ul> </td> </tr> </table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인적공제</li> <li>· 자녀세액공제</li> <li>· 혼인세액공제</li> <li>· 연금 관련 공제( ~ )</li> <li>· 기부금 관련 공제( ~ )</li> </ul>	(기출포인트) 근로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다음과 같다. <table border="1"> <tr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인적공제</li> <li>· 자녀세액공제</li> <li>· 연금 관련 공제( ~ )</li> <li>· 기부금 관련 공제( ~ 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(빨간색 글자 삭제)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/table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인적공제</li> <li>· 자녀세액공제</li> <li>· 연금 관련 공제( ~ )</li> <li>· 기부금 관련 공제( ~ )</li> </ul> (빨간색 글자 삭제)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인적공제</li> <li>· 자녀세액공제</li> <li>· 혼인세액공제</li> <li>· 연금 관련 공제( ~ )</li> <li>· 기부금 관련 공제( ~ )</li> </ul>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인적공제</li> <li>· 자녀세액공제</li> <li>· 연금 관련 공제( ~ )</li> <li>· 기부금 관련 공제( ~ )</li> </ul> (빨간색 글자 삭제)							
별책 30	3.	3. 인적공제 판단 시 기준시점 인적공제(기본공제, 추가공제)와 뒤에서 설명할 자녀세액공제 및 혼인세액공제의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시점은 다음과 같다.	3. 인적공제 판단 시 기준시점 인적공제(기본공제, 추가공제)와 뒤에서 설명할 자녀세액공제의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시점은 다음과 같다. (빨간색 글자 삭제)				
별책 37	3.	3. 혼인세액공제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이 5,500만원 이하 ~	(삭제)				